

근로청소년에게 임대한다는 건립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을 교부조건으로 제시하였으며,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국고보조금결정을 취소한 다음 보조금을 반환조치하게 된다는 내용의 취소권(철회권)을 유보하였고, 따라서 위 아파트를 근로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에게 무단으로 임대한 행위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이와 같은 교부조건 위반을 사유로 보조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조금지급결정을 취소하고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.

원심의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조금지급결정을 취소하고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보조금교부결정 취소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.

2.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

원심은, 1995. 3. 24.경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조금으로 건립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중 일부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절차가 개시될 당시 보조사업자인 원고가 우선순위 관계로 인하여 그 임대아파트 및 부지에 대하여 확보한 담보권으로도 위 경매절차에서

배당을 받지 못하여 보조금손실을 입게 되자, 피고는 원고의 건의를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위 임대아파트 경락을 원인으로 한 보조금결정 취소시 원고가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배당금이 보조금결정 취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관리시에 조성된 이자수익금에서 그 손실을 보전함을 승인하면서 향후 경락세대가 발생할 경우에도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,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는 임대아파트의 경락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보조금손실을 그 이자수익금으로 보전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보조금교부결정 취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인 원고에게 보조금 상당액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 모든 경우에 피고가 국고보조금 관리시에 조성된 이자수익금에서 원고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선례로 정착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조금교부결정 취소시 항상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원고의 보조금손실을 그 이자수익금으로 보전해 주리라는 점을 원고가 신뢰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.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,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.